

1. 개정이유

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피해구제 신청, 조사, 심의 등에 대해 ‘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’[기존 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’에서 명칭변경(‘25.1.1~)]로 일원화시켜 통합수행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석면피해인정 등의 주체가 환경산업기술원(이하 “기술원”에서 「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)로 이관(법 제6조제3항)되어 인정 결정 통지 관련 하위법령 변경(안 제4조, 안 제4조의2)

나. 석면피해의료수첩(법 제6조), 석면건강관리수첩(법 제48조) 교부·등록 등의 주체를 각각 한국환경산업기술원, 환경부에서 위원회로 변경(안 제5조, 안 제8조, 안 제9조, 안 제35조, 안 제36조, 안 제39조)

다.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·검사 비용 지원(법 제6조제8항 및 제6조제9항), 석면건강관리수첩 교부자에 대한 건강검진(법 제48조제3항)이 각각 기술원, 환경부에서 위원회로 이관되어 관련 조항 변경(안 제10조, 안 제37조)

라. 특별유족조의금 등 구제급여 신청(법 제6조제1항), 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 갱신(법 제7조제3항), 특별유족 인정(법 제14조제1항), 미지급 요양급여 등 구제급여의 지급(제17조),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(법 제

19조제1항) 및 수급권의 변동 신고에 대한 주체 또는 대상이 기술원에서 위원회로 이관되어 관련 하위법령 변경(안 제11조, 안 제16조, 안 제20조, 안 제22조, 안 제23조)

마. 석면피해판정위원회(법 제8조),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(법 제39조) 폐지에 따라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위원장, 판정위원회의 운영,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자격기준 등에 관한 조항 삭제(현행 제12조, 현행 제13조, 현행 제26조, 현행 제2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”을 “자는 「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서식의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「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(이하 “기술원”이라 한다)은”을 “「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”으로, “석면피해인정을”을 “「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(이하 “기술원”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석면피해인정을”로, “확인하여야”를 “확인하도록 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기술원은”을 “위원회는”으로,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을 “시장·군수·구청장, 기술원의 원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석면피해인정 통지 등의 보고) 기술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및 석면피해인정, 유효기간 갱신, 특별유족인정, 구제급여 및 미지급 요양급여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한 결정청구 접수·확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 본문 중 “기술원은”을 “위원회는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술원”을 “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기술원은”을 “위원회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기술원”을 “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기술원은”을 “위원회는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기술원은”을 “위원회는”으로 한다.

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기술원”을 “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기술원이”를 “위원회가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기술원”을 “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환경부장관”을 “위원회의 위원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“기술원은”을 “경우, 위원회는”으로, “법 제24조”를 “기술원으로 하여금 법 제24조”로, “지급하여야”를 “지급하도록 하여야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기술원은”을 “위원회는”으로 한다.

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16조제2항 중 “기술원은”을 “위원회는”으로, “특별유족인정을”을 “기술원으로 하여금 특별유족인정을”로, “확인하여야”를 “확인하도록 하여야”로 한다.

제20조 중 “기술원”을 “위원회”로 한다.

제22조제2항 본문 중 “기술원은”을 “위원회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기술원”을 “위원회”로, “30일”을 “기술원으로 하여금 30일”로, “지급하되”를 “지급하도록 하되”로 한다.

제23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기술원은”을 각각 “위원회는”으로 하고, 같은

조 제4항 중 “기술원의 원장”을 “위원회의 위원장”으로 한다.

제25조제목 외의 부분 중 “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심사청구서에 심사청구하는”을 “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「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6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에 재심사청구하는”으로, “기술원”을 “위원회”로 한다.

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9조제1항 중 “기술원”을 “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기술원은”을 “위원회는”으로 한다.

제31조제2항 전단 중 “환경부장관에게”를 “위원회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“환경부장관은”을 각각 “위원회는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중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을 “시장·군수·구청장, 기술원의 원장”으로 한다.

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환경부장관”을 “위원회의 위원장”으로 한다.

제36조 중 “환경부장관”을 “위원회의 위원장”으로 한다.

제37조제1항 및 제4항 중 “환경부장관”을 각각 “위원회의 위원장”으로, “할 수 있다”를 “할 수 있으며, 필요시 영 제16조제3호에 따른 비용을 기술원을 통하여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.”로 한다

제39조제1항 중 “기술원”을 “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환경부장관 또는 기술원”을 “위원회”로 한다.

제3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환경부장관 또는 기술원”을 “위원

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환경부장관”을 “위원회의 위원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제2쪽 중 “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”을 “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중 “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”을 “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표지압면 및 제2면 중 “한국환경산업기술원”을 “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”로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중 “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”을 “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”으로 하고, “처리절차”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7호서식 중 “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”을 “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”으로 하고, “첨부서류” 및 “처리절차”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8호서식, 제9호서식, 제10호서식, 제11호서식 및 제12호서식 신청인 중 “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”을 “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뒤쪽 중 “처리절차”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3호서식 중 “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”을 “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”으로 하고, “첨부서류” 및 “처리절차”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4호서식 및 제15호서식 신청인 중 “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”을

“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뒤쪽 중 “처리절차”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6호서식 및 제17호서식을 삭제한다.

별지 제18호서식 신청인 중 “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”을 “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뒤쪽 중 “처리절차”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19호서식 중 표지압면 “환경부”를 “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”로 하고, 제2면 “환경부장관”을 “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0호서식 신청인 중 “환경부장관”을 “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위원장”으로 하고 “처리절차”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석면피해인정 신청 등)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(이하 “석면피해인정”이라 한다)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	제3조(석면피해인정 신청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자는 「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5호서식의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제4조(석면피해인정 통지 등) ① 「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(이하 “기술원”이라 한다)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석면피해인정을 받으려는 자가 영 제3조 각 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았는지 또는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	제4조(석면피해인정 통지 등) ① 「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----- ----- 「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」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(이하 “기술원”이라 한다)으로 하여금 석면피해인정을 ----- ----- 확인하도록 하여야 ----.
② 기술원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그 사	② 위원회는 ----- ----- -----

실을 해당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,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그 신청을 한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5조(석면피해의료수첩의 교부) 기술원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석면피해의료수첩(이하 “석면피해의료수첩”이라 한다)을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(이하 “피인정자”라 한다)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석면피해인정 증명서를 교부하여 석

시장·군수·구청장, 기술원의 원
장 -----

-.

제4조의2(석면피해인정 통지 등의
보고) 기술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및 석면피해인정, 유효기간 갱신, 특별유족인정, 구제급여 및 미지급 요양급여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한 결정청구 접수·확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석면피해의료수첩의 교부) 위
원회는 -----

면피해의료수첩이 교부될 때까지
사용하게 하여야 한다.

제7조(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
등) ① 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별지 제5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
첩 재교부·기재내용 변경 신청서
에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
기술원에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
다.

1. ~ 3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기술원은 제1항에 따라 피인정
자가 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
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
교부하여야 한다.

④ 피인정자는 석면피해의료수첩
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한 석면피
해의료수첩을 발견하였을 때에는
즉시 기술원에 반환하거나 폐기하
여야 한다.

⑤ 기술원은 제1항제3호에 따른
신청에 따라 기재내용을 변경한
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·도
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
알려야 한다.

-----.

제7조(석면피해의료수첩의 재교부
등) ① -----

위원회-----
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위원회는 -----

-----.

④ -----

-- 위원회-----
-----.

⑤ 위원회는 -----

-----.

제8조(석면피해의료수첩의 등록·관리) 기술원은 제5조, 제7조제3항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거나 기재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

제9조(석면피해의료수첩의 반환) 피인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기술원에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호의 경우에는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(이하 “사망신고의무자”라 한다)가 반환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4. 기술원이 석면피해인정을 취소한 경우
5. (생략)

제10조(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·검사 등 관련 비용 지원) ① 법 제6조제8항에 따른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·검사 등 관련 비용(이하 “석면피해검사비용”이라 한다)

제8조(석면피해의료수첩의 등록·관리) 위원회는 -----

-----.

제9조(석면피해의료수첩의 반환) --

----- 위원회-----.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위원회가 -----

5. (현행과 같음)

제10조(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·검사 등 관련 비용 지원) ① ----

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을 할 수 있을 때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석면피해검사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신청하여야 한다.

1. ~ 3. (생략)

4. 영 제5조제3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진찰·검사 등 관련 비용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(영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술원은 15일 이내에 법 제24조에 따른 석면피해구제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에서 석면피해검사비용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석면피해검사비용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 또는 「의료급여법」 제10조에 따라 피인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하고, 영 제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한 번만 지급한다.

제11조(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 등) ① (생략)

----- 위원회 -----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위원회의
위원장-----

② ----- 경우, 위원회는 ----- 기술원으로 하여금 법 제24조-----

----- 지급하도록 하여야 -----.

제11조(석면피해인정 유효기간의 갱신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,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새로 석면피해의료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.

제12조(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위원장) 법 제8조에 따른 석면피해판정위원회(이하 “판정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술원의 원장이 위촉한다.

제13조(판정위원회의 운영) ① 판정위원회의 회의는 판정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판정위원장”이라 한다)이 소집하고, 부득이한 사유로 판정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정위원장이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판정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·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구

② 위원회는 -----

--.

<삭 제>

<삭 제>

두(口頭),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.

③ 판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다.

④ 기술원의 원장은 판정위원회의 심의 안건 및 심의 결과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고, 판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, 기술원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판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판정위원장이 정한다.

제16조(특별유족인정 신청) ① (생략)

② 기술원은 특별유족인정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유족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(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)가 영 제3조 각 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받았는지 또는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16조(특별유족인정 신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위원회는 -----
----- 기술원으로 하여금 특별유족인정을 -----

----- 확인하도록 하여야 -----
-----.

제20조(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 신청)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신청서에 기술원의 특별유족인정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.

제22조(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를 받은 기술원은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14일 이내에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14일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미지급 요양급여등은 기술원에 의하여 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을 통하여 지급 하되, 영 제13조에 따른 비율에 따

제20조(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례비 지급 신청) -----

----- 위원회 -----

-----.

제22조(미지급 요양급여등의 지급 청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위원회 -----

-----.

-----.

③ ----- 위원회 -----

----- 기술원으로 하여
금 30일 ----- 지급
하도록 하되 -----

라 기금과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담한다.

제23조(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) ① 기술원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등의 지급중단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피인정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시정을 촉구할 수 있다.

② 기술원은 수급권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중단을 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원의 원장이 정한다.

제25조(심사청구) 영 제29조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심사청구서에 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신청하여야 한다.

제26조(재심사청구) 영 제34조에 따라 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

-----.

제23조(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) ① 위원회는 -----

-----.

② 위원회는 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---- 위원회의 위원장-----.

제25조(재심사청구) -----
재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「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6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에 재심사청구하는 --- 위원회-----.

<삭 제>

지 제17호서식의 재심사청구서에
재심사청구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
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
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제27조(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의
자격기준) 법 제39조제3항제6호에

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
란 환경보건 및 사회보험 분야에
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을 말한다.

제29조(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) ①
법 제43조제3항 및 영 제38조에 따
른 수급권의 변동 신고는 별지 제1
8호서식의 수급권 변동신고서에
「민법」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
라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에 상당
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
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
여 수급권의 소멸 또는 변동 신고
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
에 기술원에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(생략)

③ 기술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금액 지급, 석면피해인정 신청 또는 법 제

<삭 제>

제29조(수급권의 변동 신고 등) ① -

[illegible]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위원회는 -----

16조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요청 등 구제급여의 지급 또는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.

제31조(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절차 등) ① (생략)

②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청받은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여야 하고, 송부받은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기일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 삭제

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결과 및 석면피해인정 신청 가능 여부 등을 해당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

-----.

제31조(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절차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위원회
에 -----.

-----.

③ 위원회는 -----

-----.

⑤ 위원회는 -----

----- 시장·군수·구청

장 및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 등을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⑥ (생략)

제35조(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) 법 제48조제1항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(생략)

2. 그 밖에 법 제48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(이하 “석면건강관리수첩”이라 한다)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

제36조(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) 환경부장관은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할 때 기술원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.

제37조(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) ① 환경부장관은 의료기관에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 · ③ (생략)

장, 기술원의 원장 -----
-----.

⑥ (현행과 같음)

제35조(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) -----

각 호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
----- 위원회의 위원장-----

제36조(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) 위원회의 위원장-----

-----.

제37조(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건강검진) ① 위원회의 위원장-----
----- 할 수 있으며, 필요시 영 제16조제3호에 따른 비용을 기술원을 통하여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주기 및 항목은 석면질병 관련 분야 전문과목 전문의의 의견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한다.

제39조(석면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 등) ①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분실하였거나 그 수첩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석면건강관리수첩 재교부 신청서를 기술원에 제출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.

②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석면건강관리수첩을 재교부받은 후 분실한 석면건강관리수첩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환경부장관 또는 기술원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.

제39조의2(석면건강관리수첩의 반환)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환경부장관 또는 기술원에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사망신고의무자가 반환하여야 한다.

④ -----

위원회의 위원장---.

제39조(석면건강관리수첩의 재교부 등) ① -----

----- 위원회-----
-----.

② -----

----- 위원회-----
-----.

제39조의2(석면건강관리수첩의 반환) -----

----- 위원회-----
-----.

-----.

1. (생략) 2.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받은 사람이 더 이상 제35조에 따른 석면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<u>환경부장관</u>이 인정하는 경우 3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 ----- <u>위원회의 위원장</u> ----- 3. (현행과 같음)
--	---